

서울로7017 보행자전용길 위치도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20호
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[주택재건축사업부문]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.

2017년 4월 6일
서울특별시

1. 기본계획 변경내용

- ① 동대문구 4(미주아파트)구역 정비기본계획 변경

구분	위치	면적(ha)	계획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주택 유형	비고
기정	제기동 892-68	1.0	210%	50%	-	1	공동	8m도로
변경	제기동 892-68	1.0	210%	50%	-	1	공동	8m도로 폐지

※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내 도로(보차혼용도로)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, 금회 상정 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차혼용도로와 연결한 획지 내에서 보도(2m)를 추가 확보할 것

2. 지형도면 : 첨부 도면과 같음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2133-7142) 및 동대문구청 건축과(☎2127-4759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[정비예정구역 결정(기정)도]



[정비예정구역 결정(변경)도]

